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람	기 관 의 장



제 801 호 2013. 2. 25(월)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28호[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2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29호[도로명주소 고시] ..... 3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30호[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5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77호[남북교류협력기금 공인 등록 공고] .....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83호[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7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84호[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6

회 람								
--------	--	--	--	--	--	--	--	--

발행: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기획홍보실(☎241-7124 행정7124)

울산광역시북구고시 제2013 - 28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20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한라상조(주) 대표이사 박영배				
주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2-11				
점용위치	상안동 366, 365 천곡동 1056-42	하천명	천 꼭 천		
점용목적	보도교 신설에 따른 공작물설치	점용면적 (m <sup>2</sup> )	구 분	일시	영구
점용기간	○ 일 시	당초 2013. 01. 07. ~ 2013. 05. 06. 변경 2013. 01. 07. ~ 2014. 01. 30.			
	○ 영 구	2013. 01. 07.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교량 설치공사	하천공사 목적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보도교 설치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점용자와 동일	공사기간	당초 2013. 01. 07. ~ 2013. 05. 06. 변경 2013. 10. 01. ~ 2014. 01. 30.		
공사위치	상안동 366번지 외 2필지				
토지 소재지	소재지 구,군,동,리	지 번	지 목	대상면적(m <sup>2</sup> )	면입면적(m <sup>2</sup> )
	부지 상안동 천곡동 계	366 365 1056-42	초 제 초	1,798 1,660 8,621	663 43 229
					935
					국(농림수산부) 국(농림수산부) 국(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13 - 29호

## 도로명주소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0-1(호계동)외 9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청 민원지적과 (☎052-241-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13. 2. 25.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미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 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순번	증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비고
1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1-14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0-1(호계동)	기존 히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 하고 등 대로에 분기하므로 열린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13-02-25	2009-08-20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1-15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20길 22(호계동)	기존 히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 사용으로 부적합 하고 등 대로에 분기하므로 열린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13-02-25	2009-08-20
3	울산광역시 북구 친곡동 853	울산광역시 북구 을달길 74[친곡동]	기존 친연과을인 음달마을에 위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13-02-25	2004-08-09
4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77-17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길 15(연암동)	고려 충렬왕세 이곳 바위에서 성스러운 흰 연꽃이 수놓은 듯 피어나 백연암이라 이를 불여겼다가 연암으로 불리게 될 험재우 별장동명으로 사용되는 이름으로 두루명을 부여	2013-02-25	2004-01-05
5	울산광역시 북구 효문동 140 2	울산광역시 북구 효선1길 37 1(효문동)	2004 01 05		
6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촌지구 758 5	울산광역시 북구 명촌3길 15(진정동)	2013-07-25	2004-12-27	
7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57-10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8길 20(호계동)	기존 히망길이 추상명사이므로 도로명을 부여 하고 등 대로에 분기하므로 열린번호 방식에 의하여 도로명을 부여	2013-02-25	2009-08-20
8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541-36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1길 16(양정동)	양정이란 나드나구가 많이 있어 지어진 이름이며 혼자 이명을 부여	2013-02-25	2004-01-05
9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명촌지구 593 5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12길 24(진정동)	2013-02-25	2004-12-27	
10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291-12	울산광역시 북구 동대4길 65-6(호계동)	누구나 선수한 이름이므로 노도명을 부여 등대산 인근에 위치한 구획단지내 지역으로 도로명 부여	2013-02-25	2001-03-22

울산광역시 북구고시 제2013\_호

##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하천법」 제30조제6항, 제33조제1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허가 및 실시계획인가하고 허가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3년 02월 21일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성명	매곡중산시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장 이정창									
주소	울산광역시 북구 매곡동 795-74									
점용위치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명	매곡천							
점용목적	공작물의 신축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 (m <sup>2</sup> )	구분 지방하천	일시 -						
점용기간	2013. 02. 25. ~ 영구									
하천공사의 명칭 하천공사 시행자 성명(주소) 공사위치	매곡중산지구 차집관로 매설공사 점용자와 동일 신천동 745-118번지	하천공사 목적 공사기간	관로매설을 위한 공작물 신축 2013. 02. 25. ~ 2013. 03. 31.							
토지 소재지	<table border="1"> <tr> <td>소재지 구,군 농,리</td> <td>지번 745-118</td> <td>지목 천</td> <td>대장면적(m<sup>2</sup>) 71,552</td> <td>면적면적(m<sup>2</sup>) 546</td> <td>소유자 국(국토해양부)</td> </tr> </table>	소재지 구,군 농,리	지번 745-118	지목 천	대장면적(m <sup>2</sup> ) 71,552	면적면적(m <sup>2</sup> ) 546	소유자 국(국토해양부)			
소재지 구,군 농,리	지번 745-118	지목 천	대장면적(m <sup>2</sup> ) 71,552	면적면적(m <sup>2</sup> ) 546	소유자 국(국토해양부)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 177호

## 공 고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6조에 의거 등록한 공인을 「울산광역시 북구 공인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5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 신규공인 최초사용 가능일: 2013년 2월 25일
- 등록 사유: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영
- 등록 공인

공 인 명	규 격(cm)	서 체	인 영
울산광역시북구남북 교류협력기금운용관인	2.0×2.0	한글전서체	
울산광역시북구남북 교류협력기금출납원인	1.8×1.8	한글전서체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을 주민참여과로 부서조정 및 명칭변경하고, 건축주택과 분장사무중 일부를 개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 가.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 부서조정 및 명칭변경
  - 당초 :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  
변경 : 주민참여과 세대공감창의놀이터담당
  - 조정 사유 :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업무를 주민참여형 공간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참여과로 부서 조정 및 명칭 변경
- 나. 건축주택과 분장사무중 일부개정(국과,담당 명칭 정정)
  - 분장사무 개정 :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감독(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에 관한 사항
  - 조정 사유 : 현행 실제에 맞게 '도시경제국'을 '건설도시국'으로, '시설 재난관리과 시설담당'을 '회계과 공공시설담당'으로 정정

###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3.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전화: 052-241-7102, 팩스: 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배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주민참여과, 건축주택과, 농수산과 분장사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표]

## 구본청 실·과 사무분장표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1. 주민참여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2. 시민단체 신설,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 3. 주민참여리더 발굴, 육성, 교육에 관한 사항 4.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에 관한 사항 5. 북한 이탈주민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 6. 행정서비스현장 운영에 관한 사항 7. 선거 및 국민투표에 관한 사항 8. 바르게살기운동 업무지원에 관한 사항 9. 타 과에 속하지 아니한 사회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10. 각종여론 및 동향관리 11. 구청장 동방문 및 간담회 개최에 관한 사항 12. 명절연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13. 국가기반체계 보호에 관한 사항 14.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 15.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 16. 새마을금고에 관한 사항 17. 친절배가 운동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18. 기관단체 협의회에 관한 사항 19. 주민조례제정·개폐에 관한 사항 20. 자율방범대 운영에 관한 사항 2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진상 및 피해신고서 접수와 사실 확인에 관한 사항 22. 민주화운동관련자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23. 행정사 업무에 관한 사항 24.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5.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26.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에 관한 사항 27. 동사무소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28. 통·반 조직운영 및 민간인 표창에 관한 사항 29. 동 예산 운영 및 동행정 업무 종합조정(동시달 문서통제 등)에 관한 사항 30. 적십자 회비 모금에 관한 사항 31.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32. 주민만남의 날 행사운영에 관한 사항 33. 새마을소득특별자금운영에 관한 사항 34. 커뮤니티비즈니스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5. 커뮤니티비즈니스 중간조직 신설 육성 36. 마을기업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 37. 평생학습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 38. 평생학습 정책연구와 주민요구 조사 39. 국내외 평생학습 기관·단체 간 교류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40. 평생학습 홈페이지 운영 41. 평생학습 동아리 프로그램 지원 관리 42.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연수사업 등 시책 추진 43. 평생학습 우수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특화사업 개발 운영 44. 연도별 사업 평가(성과집, 영상을 제작 등) 45. 평생학습 축제운영과 참가 46. 평생학습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 47. 평생학습 주민교육(교양, 전문교육) 사업 추진 48. 평생교육센터 관리와 운영지원 49. 평생교육협의회,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관리 운영

부 서 명	분 장 사 무
주민참여과	50. 평생학습 강사 응행제 운영 51. 그 밖에 평생학습프로그램(제3대학, 주민자치대학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2. 추억의 학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3. 해병대 전우회 운영에 관한 사항 54. 교육경비 지급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5. 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6. 지역자원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7. 지역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8.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주택과	1. 건축행정건실화 대책 수립 2. 건축신고 및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 3. 무허가 건축물 단속 및 철거에 관한 사항(GB 및 국공유지 제외) 4. 건축위원회 및 건축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5. 특정건축물을 양성화에 관한 사항 6. 가설건축물 허가 및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 7. 위법건물을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에 관한 사항 9. 건축행정의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 10. 건축허가 및 준공처리에 관한 사항 11. 건축시공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2.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3. 건축사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4.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15. 주택법에 의한 사업승인에 관한 사항 16. 주택행정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7. 주택 재개발에 관한 사항 18. 기타 주택건설에 관한 사무 19. 시설(건물, 토지)동원에 관한 사항 20. 아파트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21. 아파트 관리주체에 대한 감독에 관한 사항 22. 공동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23. 공동주택 관리업무에 관한 사항 24. 임대사업자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에 관한 사항 25. 건축법에 의한 시공감독 및 조치에 대한 사항 26.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 27. 건축선의 지정·고시에 관한 사항 28. 건축에 관한 조사 계획, 통계에 관한 사항 29. 개발제한 구역내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 30. 건축물 재난재해에 관한 사항 31. 건축사 및 공사 감리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 32. 공사감리자 지정, 변경,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33. 건축에 관한 기술지도 및 민원지도에 관한 사항 34. 임대주택사업에 관한 사항 35.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36. 놓어뒀던 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37.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설립인가 및 주택건설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38. 주택법에 의한 사용검사에 관한 사항 39. 주택법에 의한 행위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40.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에 관한 사항 41. 공동주택 입주자 모집 승인에 관한 사항 42.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조합설립 인가에 관한 사항 43.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사업인가에 관한 사항 44.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업 관리처분 인가에 관한 사항 45.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항 46. 공동주택 주택관리 업무개시 신고에 관한 사항 47.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8. 재해피해 건축물 조사 및 보상에 관한 사항 49. 도시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부 서 명	분 장 사 무
건축주택과	<p>50. &lt;삭제 08-12-24&gt;</p> <p>51. &lt;삭제 08-12-24&gt;</p> <p>52. &lt;삭제 08-12-24&gt;</p> <p>53. &lt;삭제 08-12-24&gt;</p> <p>54. &lt;삭제 08-12-24&gt;</p> <p>55. &lt;삭제 08-12-24&gt;</p> <p>56. &lt;삭제 08-12-24&gt;</p> <p>57. &lt;삭제 08-12-24&gt;</p> <p>58. &lt;삭제 08-12-24&gt;</p> <p>59. 옥외광고물 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p> <p>60.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에 관한 사항</p> <p>61.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실시 및 위탁에 관한 사항</p> <p>62. 옥외광고업의 신고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p> <p>63.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관한 사항</p> <p>64. 옥외광고물 심의에 관한 사항</p> <p>65. 현수막 게시대 및 게시판 설치, 관리 감독에 관한 사항</p> <p>66.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에 관한 사항</p> <p>67. 불법 고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p> <p>68.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에 관한 사항</p> <p>69. 옥외광고를 위반에 관한 사항</p> <p>70.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물 신축시 공사감독(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에 관한 사항 &lt;개정&gt;</p> <p>71. 건축물현황 정리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p>72. 건축물대장 등록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p>73. 건축물대장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p>74. 건축물대장 관리 및 발급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p>75. 건축물 부존재 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p>76. 건축물대장 전산화에 관한 사항 &lt;신설 08-12-24&gt;</p>

부 서 명	분 장 사 무
농수산과	<p>1. 농업행정의 종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2. 농업단체 지도육성에 관한 사항</p> <p>3. 농지개량에 관한 사항</p> <p>4. 분배농지에 관한 사항</p> <p>5. 수도증산사업에 관한 사항</p> <p>6. 정자이용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p> <p>7. 농가부업 장려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p> <p>8. 개인인가에 관한 사항</p> <p>9. 쌀소득 등 보전적불제 지원에 관한 사항</p> <p>10. 농업기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p> <p>11. 친환경농업 지원에 관한 사항</p> <p>12.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13. 농업진흥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p> <p>14. 농어촌육성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p> <p>15. 농림사업에 관한 사항</p> <p>16. 농축생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p> <p>17. 축산물 가격안정에 관한 사항</p> <p>18. 농림시설 재해대책 및 복구에 관한 사항</p> <p>19.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p> <p>20. 농정부번축 양곡 관리에 관한 사항</p> <p>21. 농산물을 원산지 및 유전자 변형표시 지도에 관한 사항</p> <p>22. 농산물을 수출에 관한 사항</p> <p>23. 과수생산 수질 및 경비에 관한 사항</p> <p>24. 가축사육업 등록에 관한 사항</p> <p>25. 동물병원 등록 및 지도에 관한 사항</p> <p>26. 원예 및 특용작물에 관한 사무에 관한 사항</p> <p>27. 농업용수 개발을 위한 농지개발계 조직 운영에 관한 사항</p> <p>28. 농림축수산물 생산지원 및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p> <p>29. 농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p> <p>30. 양식사업 및 어업기반 조성을 위한 지도 및 지원에 관한 사항</p> <p>31. 신갈작물 생산 장려에 관한 사항</p> <p>32. 농작물 봉종해방제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p> <p>33.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p> <p>34. 축산진흥 지방특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p> <p>35. 축산물 유통개선 지도에 관한 사항</p> <p>36. 농·축·수산물 직거래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p> <p>37. 축산물보관업·운반업·판매업 허가에 관한 사항</p> <p>38. 축산물 위생관리 지도에 관한 사항</p> <p>39. 유기동물 보호·처리에 관한 사항</p> <p>40.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p> <p>41. 어선등록 및 변경신청 등에 관한 사항</p> <p>42. 어업허가 신청 및 면경허가 신청에 관한 사항</p> <p>43. 어선등록망소 신청 및 어업허업 신고에 관한 사항</p> <p>44. 선박원부등본 및 어선표지판 교부에 관한 사항</p> <p>45. 수산물 원산지 표시지도에 관한 사항</p> <p>46. 어선 건·개조 발주에 관한 사항</p> <p>47. 낚시어선업에 관한 사항</p> <p>48. 어선 및 연안어업에 관한 사항</p> <p>49. 수산증양식 및 어로시설사업에 관한 사항</p> <p>50. 수산자원 조절에 관한 사항</p> <p>51. 불법어업 징도 단속에 관한 사항</p> <p>52. 해양오염에 관한 사항</p> <p>53. 어항에 관한 사항</p> <p>54. 어촌계등 단체에 관한 사항</p> <p>55. 어업인 후계자 및 전업어가에 관한 사항</p> <p>56. 어업인 교육에 관한 사항</p> <p>57. 연안관리에 관한 사항</p> <p>58. 어선안전조업에 관한 사항</p> <p>59. 수산물 가공업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p> <p>60. 수산물유통에 관한 사항</p> <p>61. 어업면허 및 어장관리에 관한 사항</p> <p>62. 어촌종합개발사업에 관한 사항</p> <p>63. 수산재해에 관한 사항</p> <p>64. 어업권분쟁 및 보상에 관한 사항</p> <p>65. 수상레저사업 및 기구등록에 관한 사항</p> <p>66.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p> <p>67. 공유수면관리에 관한 사항</p> <p>68. 자율관리어업에 관한 사항</p> <p>69. 연근해어선 구조조정사업에 관한 사항</p> <p>70. 친환경무상급식에 관한 사항</p> <p>71. &lt;삭제&gt;</p>

## 신·구 별표 대비표

**【주민참여과】**

현 행	개 정 안
1~57. (생략)	1~57. (현행과 같음) <u>58.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u> <u>&lt;신설&gt;</u>

**【건축주택과】**

현 행	개 정 안
1~69. (생략)	1~69. (현행과 같음)
70. 도시경제국 소관 공공시설물(시설재난관리과 시설담당 사무 제외) 신축시 공사감독에 관한 사항	70. 건설도시국 소관 공공시설을 신축시 공사감독 (회계과 공공시설담당 사무 제외)에 관한 사항 <u>&lt;개정&gt;</u>
71~76. (생략)	71~76. (생략)

**【동수산과】**

현 행	개 정 안
1~70. (생략)	1~70. (현행과 같음)
<u>71. 구 음식물자원화시설 재생에 관한 사항</u>	71. <삭제>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13-184호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2월 22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 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 이유**

-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을 주민참여과로 부서조정 및 단위업무 명칭 변경하고, 건축주택과 세부사무명 추가를 위하여 관련 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 내용**

가. 농수산과 시설재생담당 부서조정 및 단위업무 명칭변경

- 농수산과 <삭제>

- 단위업무 : 구 음식물자원화 시설재생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사업명 : 시설 설치계획 수립 (담당자 기안, 구청장 결재)  
기타 일반사항 (담당자 기안, 과장 결재)

- 주민참여과 <신설>

- 단위업무 : 세대공감 창의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세부사업명 : 시설 설치계획 수립 (담당자 기안, 구청장 결재)  
기타 일반사항 (담당자 기안, 과장 결재)

나.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신고 및 협의' 단위업무에 세부사무명 추가

- 건축주택과 <신설>

- 세부사업명 : 건축허가 변경허가 (담당자 기안, 과장 결재)

### 3. 의견 제출

이 규칙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3.4.(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기획홍보실장, 전화: 052-241-7102, 팩스: 052-241-71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주소,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4. 기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천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안은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기획홍보실에 배치하여 예고기간동안 공시합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 호

##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 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중 주민참여과 단위업무 51번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장	국 장	부 국 장	
설무자	답당					
1. ~ 50. <생략>						
51. 세대공간 창의 놀이터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가. 시설 설치계획 수립 나. 기타 일반사항	기안 ○				

건축주택과 단위업무 18번 중 세부사무명 가(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업 무	세 부 사 무 명	기안 및 전결구분				구 청 장 결 재
		담당자	실· 과장	국 장	부 국 장	
설무자	답당					
1. ~ 17. <생략>						
18.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신고 및 협의	가. 건축허가 (1) ~ (9) <생략> (10) 건축허가 변경허가 나. ~ 너. <생략>	기안 ○				
19. ~ 36. <생략>						

농수산과 단위업무 107번은 삭제한다.

###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 별표 대비표

주제[주제]

현	현	기안 및 전결구분	기안 및 전결구분	기안 및 전결구분
단위업무	체부사부명	단위업무	체부사부명	단위업무
단위업무	체부사부명	단위업무	체부사부명	단위업무

○ 건축주택과

현	현	개정안					
		기안 및 천결구분			기안 및 천결구분		
단당자	설·국장	부·부장·전재	단당자	설·국장	부·부장·전재		
설무자	담당·과장	설무자	담당·과장	설무자	담당·과장		
단위 업무	세부사무명		단위 업무	세부사무명		1. ~ 17. <생략>	1. ~ 17. <생략>
						18. 진축법에 의한 진축하기. (1) ~ (9) <생략>	1. 진축하기. (1) ~ (9) <생략>
18. 진축법에 의한 진축하기. 신고 및 협의 내. ~ 내. <생략>						(10) 진축하기 법령화가 <신설> 나. ~ 너. <생략>	기안. ○
19. ~ 36. <생략>							19 ~ 36. <생략>

## ○ 농수산과

현 헤		기안 및 전결구분				개정안			
		기안자	답답자	설명	부수장	단위업무	세부사업	사무명	설정자
단위업무	세부사업	설명자	답답자	설명	부수장	단위업무	세부사업	사무명	설정자
1. ~ 106. <생략>						1. ~ 106. <생략>			
107. <small>장난감미술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시장</small>	가. 시설 설치계획 수립	기안			O				
	나. 기타 일반사항	기안	O		O	107. <삭제>			